

제5장 예금거래의 상대방





학습개요

핵심 POINT

1. 수신거래 상대방을 분류하는 의의를 알고 수신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자연인, 법인 및 단체
2. 미성년자와의 거래시 유의점을 이해한다.
3. 법인 및 단체와의 거래시 대표기관을 통한 거래 방법을 습득한다.
4.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할 수 있다.
5.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판정의 의미를 안다.

예금거래의 상대방이 더 어렵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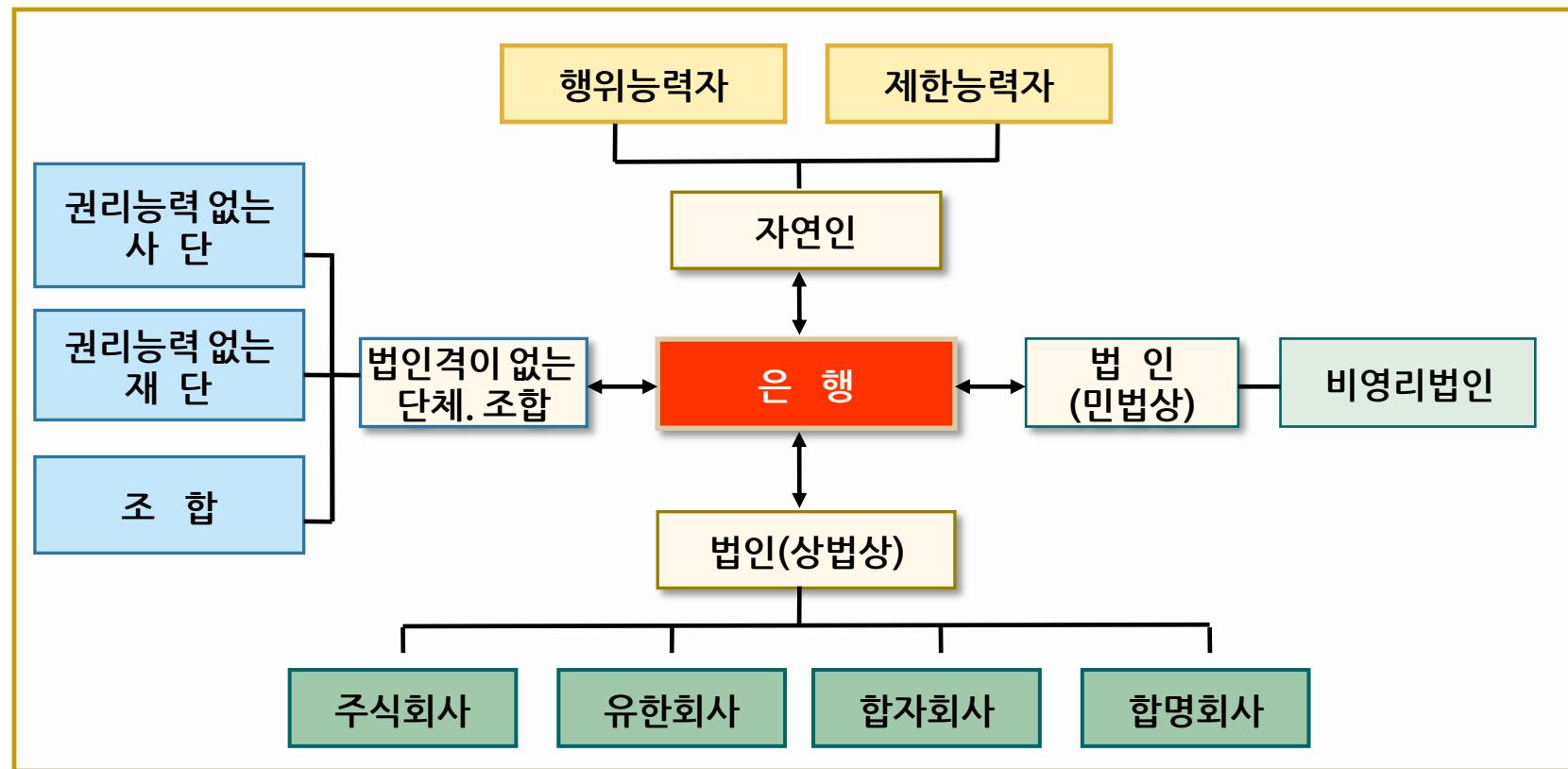
Who?

1. 수신거래의 상대방은 여신거래에서 보다 훨씬 다양함
예를들어 여신거래에서는 임의단체(권리능력 없는 사단)는 거래 상대방으로 취급하지 않으나 수신거래에서는 가능함
2. 또한 실거래에서 여신거래시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많은 주의를 하나 수신거래처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임
하지만 향후 사고처리, 예금지급 업무를 고려하면 결코 간단하지 않다.

예금거래의 상대방

은행과 예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제한이 없으나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은 당좌거래

약정에 의거 거래자의 수표, 어음 등의 지급사무를 위임받은 계약이 중심이므로 반드시 행위능력자와 거래하여야 하며 법인,
기타 관서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대표기관만이 행위능력을 가지므로 이를 조사하여 합법적인 거래를 하여야 한다.





자연인

자연인
(自然人)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등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후견인)의 동의를 얻거나 대리행위에 의하여야 한다.
- 행위무능력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해서 거래가능
- 그러나 예금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동의없이도 예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특별한 절차 없이 예금을 수납할 수 있음(일부 예금 제외).
-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행위무능력자와 단독으로 예금거래를 하였을 때는 법정 대리인 또는 무능력자가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하면 계약은 무효가 됨.

* 민법상 미성년자

구분	정의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의 권한
미성년자	만19세 미만의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권자 : 부모 • 후견인 : 친권자가 없을 때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

* 민법상 후견제도

구분	정의	후견인	후견인의 권한
피성년 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성년후견인	등기사항증명서 (현재 유효사항)의 기재 사항 확인
피한정 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한정후견인	
피특정 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 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	특정후견인	



[참고] 후견개시 고객의 업무처리

I. 후견제도 개요

1. 성년 후견 제도란?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 지원을 돋는 제도로,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폭넓은 보호와 지원의 제공을 목적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본인 혹은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의사의 감정을 통해 성년 후견 당사자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진술을 받는 절차를 거쳐 후견인을 선임한다.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2. 관련 법령 :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 성년 후견 종류

구 분	성년후견	한정후견
개시사유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후견개시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이내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견개시 시점	성년 후견개시 심판 확정 시	한정 후견개시 심판 확정 시
공시방법	법원의 등기 촉탁	법원의 등기촉탁
본인의 행위능력	원칙적 행위능력 상실자	원칙적 행위능력자
후견인의 권한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참고] 후견개시 고객의 업무처리

II. 후견 개시 고객 내점 시 업무처리 방법

1. 후견 개시 고객 내점 시 업무 처리 흐름도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

(성년)후견인 단독 또는 피(성년)후견인 동반 내점하여 지급거래 제한 등 은행 업무처리 요청

증명 서류 징구하여 후견개시 내용 확인 후 제신고 재발행 신청서, 필요 시 후견인 동의서 징구 후 피후견인 코드 등록

피후견인 코드 등록 내용 전 점 공유되어 이후 영업점 내점 시 거래 제한 및 주의 내용 공유

* 사고코드 전산 입력 방법

① 제신고 및 재발행 신청서 징구

- 기재내용 : 피후견인, 후견인, 재판확

정일, 사건번호, 권한 범위, 후견감독인

선임 여부 등

② 통합단말 # 28번 사고신고 등록·해제

The screenshot shows a Windows application window titled '[0000280003] 사고신고등록·해제(고객) [테스트]'. The window has several input fields and buttons. The '고객번호' field contains '656600722' and the '실명번호' field contains '600220-1*****'. The '고객명' field is set to '송이강'. In the '주의사항 등록정보' section, the '업무구분' dropdown is set to '1 등록'. The '사고코드' dropdown is set to '218 피후견인 등록 고객'. The '내용코드' dropdown is set to '21801 피성년후견인'. The '시작일자' field is set to '2016-05-27'. A red box highlights the '사고코드' and '내용코드' fields. The bottom of the window shows a table with columns: 고객번호, 사고코드, 내용코드, 사고금액, 시작일자, 등록사유내용, and 법적조치결정일자.

[사례] 성년후견 개시심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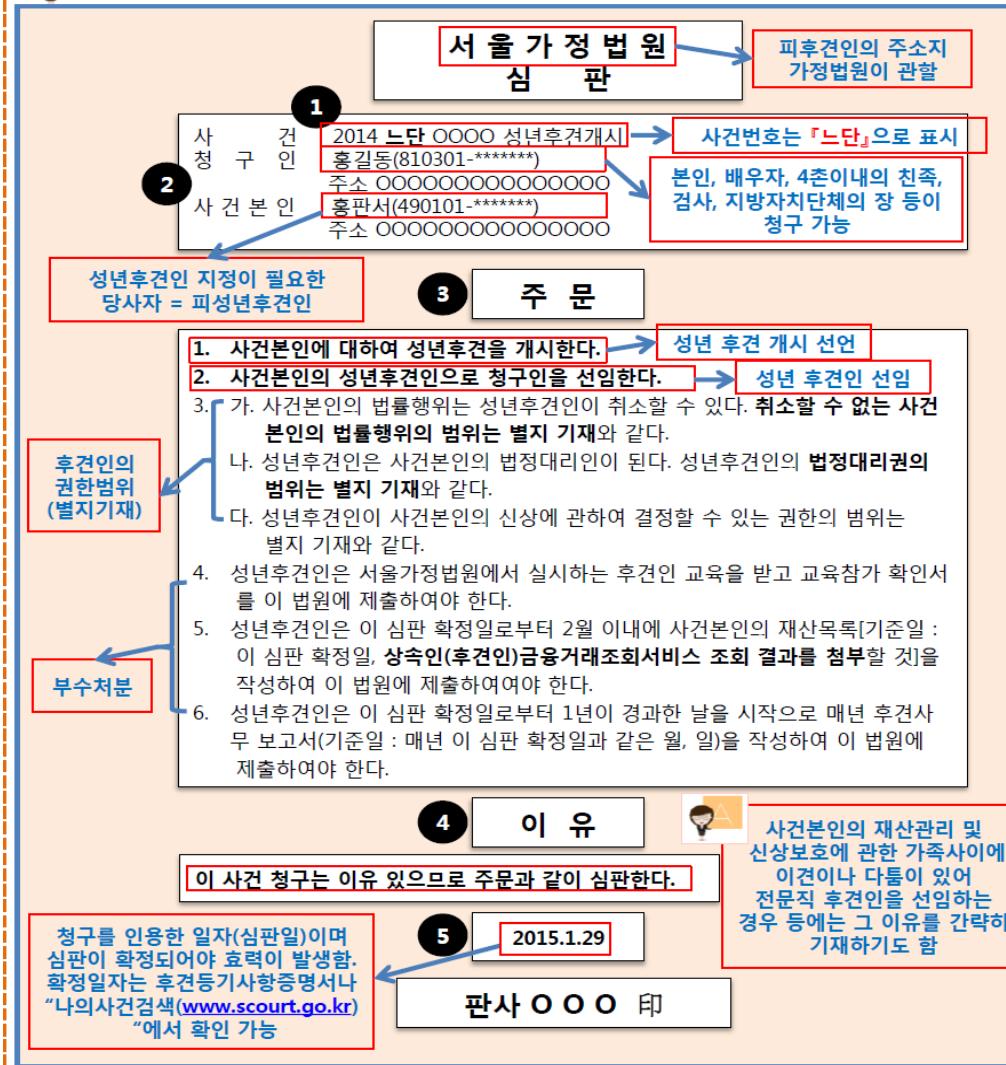


성년후견 개시 심판문,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성년후견 개시 심판문은 크게 ❶ 사건명 ❷ 당사자 ❸ 주문(主文) ❹ 이유

❺ 심판일 ❻ 대리권의 범위 등 별지 목록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례] 성년후견 개시심판문

(계속)

⑥ 대리권의 범위 등 별지 목록

I.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취소권 제한 없음

후견인의 동의나 대리 행위 없이 단독으로 예금거래를 하였을 때는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계약은 무효가 되므로 예금거래 시 각별한 주의 필요

II.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법정대리권 제한 있음

아래 사항은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함

- 금전을 빌리는 행위
-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 행위
- 상속의 단순승인,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명시되어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득해 를 것을 안내

III.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아래 사항에 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성년

후견인이 결정권을 가짐

1. 의료행위의 동의
2. 거주·이전에 관한 결정
3. 사회복지서비스 선택 또는 결정



다만, 민법 제947조의2 규정상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열거한 사항과는 별개로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등 권한이 제한됨
(예)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례] 후견 등기사항증명서(한정후견)

2

후견 등기사항증명서(한정후견)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고유번호 000230-2015-

【사건본인】

사항번호	구 분	(사건본인에 관한 사항)	내 용	피한정후견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등 본인에 관한 사항
1	후견등기기록작성	【성명】 이 [REDACTED] 【성별】 남 【출생여부】 [REDACTED] 【주민등록번호】 [REDACTED] 【등록기준지】 [REDACTED]		

【등기】 서울가정법원 2015년 11월 17일 접수 제497호

등기일련번호 000230-2015-

【한정후견사항】

사항번호	등기 목적	(후견개시 및 종료에 관한 사항)	내 용	후견의 종류, 사건번호, 재판확 정일, 후견 종료 여부 확인
1	한정후견개시	【심판법원】 서울가정법원 【사건의표시】 2015느단 [REDACTED] 한정후견 개시 【재판확정일】 2015년 11월 17일 【등기】 서울가정법원 2015년 11월 17일 접수 제497호		

사항번호	등기 목적	(후견인에 관한 사항)	내 용	후견인 성명, 대리권 등 목록, 후견인 권한분장 사항 확인
1	한정후견인선임	【성명】 [REDACTED] 【주민등록번호】 [REDACTED] 【주소또는사무소】 서울특별시 [REDACTED] 【대리권동목록】 2015한정237 【등기】 서울가정법원 2015년 11월 17일 접수 제497호		



[사례] 후견 등기사항증명서(한정후견)

2

(계속) 후견 등기사항증명서(한정후견)

대리권등록특 2015한정237

I.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피한정후견인이 아래 사항에 관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만 법원의 허가사람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한정후견인이 동의함에 있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1. 재산관리

가. 부동산의 권리 · 보존 · 처분

처분

구입

임대차계약의 체결 · 변경 · 종료

보증금의 수령 및 반환

점세권, 담보권 설정계약의 체결 · 변경

부동산의 신축 · 증축 · 수선에 관한 계약의 체결 · 종료

나. 예금 등의 권리

예금 세좌의 개설 · 변경 · 해약 · 임금 · 이체 · 인출

증권 계좌의 개설 · 변경 · 해약 · 임금 · 이체 · 인출

라. 소급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 변경 · 종료

보험금의 수령

라. 임기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관리

정기적 수입(임료, 연금, 사회보장급여 등)의 수령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정기적 지출(임료, 연금, 보험료, 대출원리금 등)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기준·체무의 변제 및 이에 관한 제반절차

마.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바. 물품의 구입, 판매, 서비스 이용계약(휴대폰, 신용카드 개설 등)의 체결 ·

변경 · 종료

사. 유체동산, 증서 및 중요문서 등의 보관 및 관리

아.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

근로계약의 체결 · 변경 · 종료

임금의 수령

자, 급전, 유체동산 등의 차용 · 대여 · 증여

차, 보증행위

2. 기타

가. 소송행위 등

위에서 정한 각 행위의 관련된 분쟁의 처리

소송행위 및 변호사 등에 대한 소송위임

나. 취소권 행사 후 원심회복과 관련한 사항

피한정후견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으며 법원의 허가사항을 별도로 정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열거된 예금 관련 행위는 피후견인 단독으로 행사하지 못하며 한정후견인 동의를 득해야 한다.

II.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한정후견인은 아래 사항에 관하여 대리권을 가짐. 다만 법원의 허가사항도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한정후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한정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리권을 행사할 있는 범위를 열거하고 있으며 법원의 허가사항을 별도로 정한 경우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사례] 후견 등기사항증명서(한정후견)

2

(계속) 후견 등기사항증명서(한정후견)

대리권등록록 2015한정237

1. 세간관리
 - 가. 부동산의 관리·보존·처분
처분
구입
구입
임대차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보증금의 수령 및 반환
전세금, 담보권 설정계약의 체결·변경
수령인의 전속·증여 수신에 관한 계약의 체결·변경
 - 나. 예금 등의 관리
예금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증권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 다. 보험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보험금의 수령
 - 리. 정기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관리
정기적 수입(임료, 연금, 사회보장급여 등)의 수령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정기적 지출(임료, 연금, 보험료, 대출원리금 등)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기준 채무의 변제 및 이에 관한 제반절차
 - 마. 신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 바. 물품의 구입·판매, 서비스 이용계약(휴대폰·신용카드 개설 등)의 체결·변경·종료
 - 사. 유체동산, 증서 및 중요문서 등의 보관 및 관리
 - 아. 공법상의 행위(세무신고 등)
2. 기타
 - 가. 소송행위 등
위에서 정한 각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처리
소송행위 및 민호사 등에 대한 소송위원
 - 나. 취소권 행사 후 원상회복과 관련한 시정

III.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 없음

수수료 1,200원 영수함

발행법원 서울가정법원

이 증명서는 후견등기기록의 내용과 불일치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15년 11월 23일

등록번호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발급확인번호를 통해서 증명서 발행법원의 발급담당자 또는 후견등기기관에게 문의하여 확인 가능

만편번호 20151400000290615000017000216178010237

발급확인번호 004X-MBZ-F8A1

4 / 4

발행일자 2015/11/23 14:23:30





법인

법인
(法人)

- 자연인 이외의 법률상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를 말함
- 법인의 행위능력은 대표기관만이 가지므로 예금거래는 대표기관의 명의에 의하며 당해기관의 명칭과 대표기관의 자격을 명시하여 거래해야 함
- 법인은 관념상의 존재이므로 법인의 현실적인 행위는 대표기관이라는 자연인을 통해 할 수 밖에 없는데, 법인과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법인의 대표기관이 누구인가를 확인하여야 함
- 실무적으로 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징구하여 확인한다.

법인의 종류		거래의 상대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전담자로 임명된 출납공무원 또는 기관장
민법상 법인 (사단, 재단법인)		이 사
상법상 법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단독대표, 각자대표, 공동대표)
	합명회사	업무집행사원 (정하지 않은 경우 각 사원)
	합자회사	업무집행사원 (정하지 않은 경우 무한책임사원)
	유한회사	이 사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이사)
기타 특수법인 (민.상법 이외 특별법에 의해 설립)		당해 설립근거법령에 의한 합법적인 대표자
기타 법인	파산법인	파산관재인
	정리법인	재산관리인

[참고] 법인등기의 구분



1. 법인에 관한 등기는 상업등기,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로 구분이 됨

2. 상업등기

- 상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기관이 상업등기기록이라는 공적장부에 회사, 지배인, 기타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법정의 절차에 따라 기록하는 것 또는 그와 같은 기록 자체
- 상법상 회사는 일정한 상법상 요건만 갖추면 법인으로 설립등기 할 수 있는 준칙주의임

3. 민법법인등기

- 민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목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관한 등기를 말함
- 민법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이를 법인으로 설립등기 할 수 있는 허가주의를 취함

4. 특수법인등기

- 특수법인등기라는 상법상 회사,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제외한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등기를 말함
- 해당 법인의 설립 근거법률의 입법목적에 따라 허가주의 또는 준칙주의 등의 태도를 취함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현재사항)	
등기번호	1
등록번호	2
명 칭	사단법인 교향 청교기구 한국지부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643-1번지 206호
목 적	
법인은 교향 청교기구의 한국지부이며 동시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소속으로서 하느님 백성의 보통적 선교 정신을 즐진하는 데, 그리고 지역 교회 지방의 선교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며 주체는 기관이며, 세금의 세제의 신고와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및 선교 활동을 지원하고, 교육 및 선교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한다.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해외 선교 후원 및 지원 2. 국내 공소 및 평생 선교 및 체제 후원 3. 국내, 해외 선교지역 신학교 및 초, 중, 고 후원 4. 선교 활성화와 위한 정부인 복지시설 후원	
등본에 관한 사항	
이사 변승 1**** 대표 이재우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643-1 승무 303-12-04-00 취임 2011년 05월 13일 등기	
이사 2011년 05월 13일 취임 2011년 10월 05일 등기	
이사 2011년 05월 13일 취임 2011년 10월 05일 등기	
이사 2011년 05월 13일 취임 2011년 10월 05일 등기	
이사 2011년 05월 13일 취임 2011년 10월 05일 등기	
기타 사항	
1. 자산의 총액 금 556,236,400원 2. 출자의 방법 법인의 수입금은 성소주일 현금과 천교주일 현금(각 교구에서 납부),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3. 법인의 출연금 기관별 2009년 05월 5일	
4.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1. 법인의 해산하는 경우에는 종파에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결과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법인이 배산한 때의 권리·재산은 출자의 의결을 거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또는 법인과 유	
5. 설립으로 그어진 부분은 반드시 (현장, 경정)된 표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필리로 출력 가능합니다. 설정일자 : 2013년04월02일 12시14분26초 1/2 -	



기타 법인격이 없는 단체 및 조합

임의단체/조합

-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 그 단체의 대표자나 개인명의로 거래
- 조합(組合) : 조합장 등 선출된 업무집행사원 개인명의로 거래.

권리능력 없는 사단(社團)	권리능력 없는 재단(財團)	조 합(組合)
사단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법정절차에 따른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단	재단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법정절차에 따른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재단	민법상 2사람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
예>학회, 동창회, 종교단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행우회, 각종 사교단체등	예>장학재단, 종교재단등	예>동업계약
단체의 대표자나 개인명의로 거래		선출된 업무집행사원(대표조합원) 개인명의로 거래



거주자와 비거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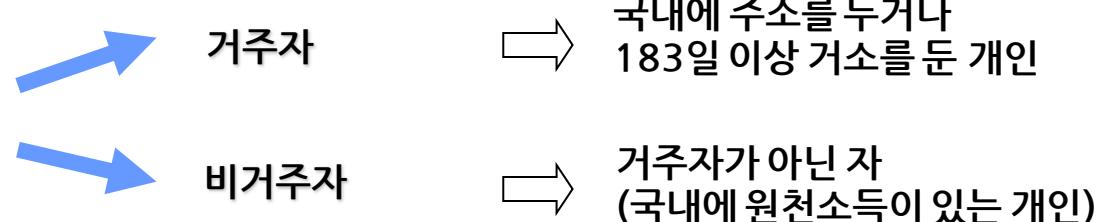
외국환거래법상



분류이유

- ✓ 예금주의 거주성 및 예치자원의 출처에 따라 대외지급이 자유로운 자금과 그렇지 않은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한 목적임
- ✓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바탕으로 구분되는 소득세법상의 거주성 분류와 차이가 있음

소득세법상



분류이유

-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일반과세대상”과 “제한세율 적용대상”을 구별하기 위한 목적임

조세협약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게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상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세율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소득세법상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서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한세율

✓ 소득세법상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에 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단,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봄
- ②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 거소를 둔 기간 계산

(가) 국내에서 거소를 둔 기간

- ▲ 입국일의 다음날부터 출국일까지

(나)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봄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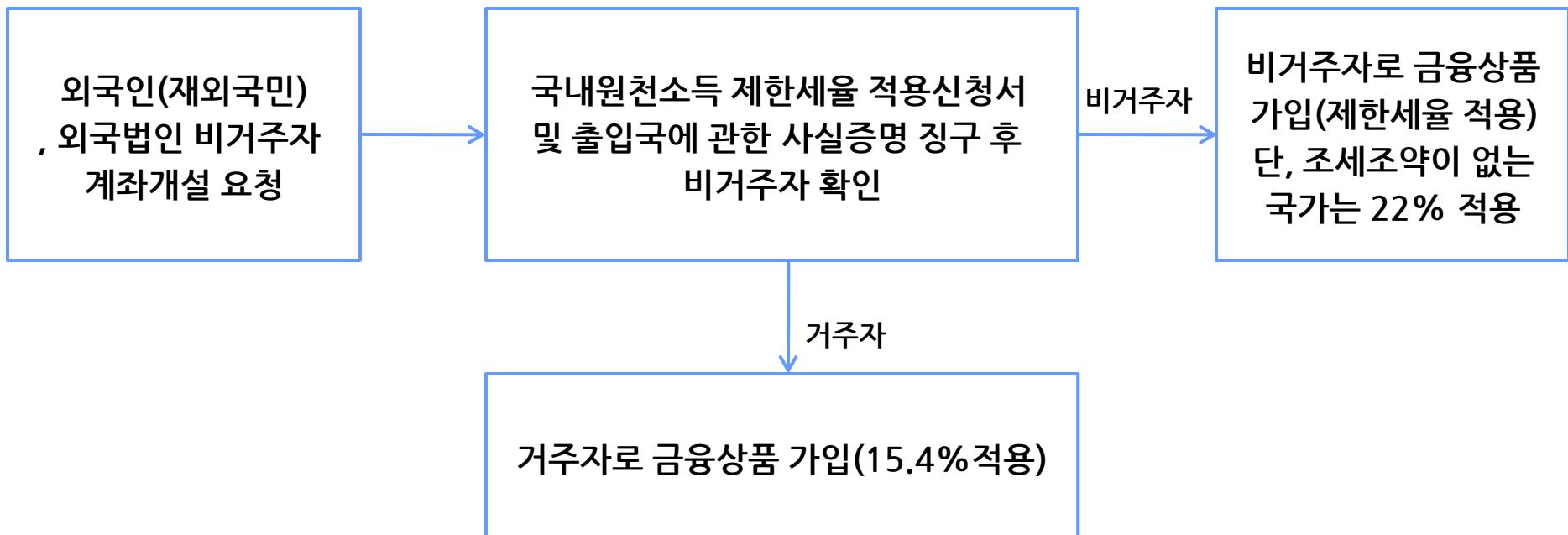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 ▶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 ▶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의 판정방법

(1) 판정절차(흐름도)



- ✓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미제출로 비거주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국내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22% 적용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의 판정방법

(2) 적용범위

▲ 금융기관이 개설한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를 비거주자(개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3) 판정원칙

▲ 고객이 실명확인증표로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는 경우
본인이 비거주자임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판단하고 취급

(4) 비거주자 판정시기

(가) 징구시기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외국법인이 비거주자로 금융상품 가입신청시, 만기·중도 해지시, 최종 징구 후
매3년마다 (이자원가식, 이자지급식 계좌만 보유한 고객은 필히 징구할 것)

(나) 비거주자 판정시 제출받을 서류

①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 ⑦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추후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가입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직접 작성토록 함
- ⑧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실질귀속자)가 제출한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최초로 제출된 날로부터 3년 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다시 제출하여야 함.

②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단, 부득이한 경우 법무부 출입국 기록 온라인 조회시스템 활용 가능.

③ 여권사본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의 판정방법

- ✓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비거주자용)」의 비거주자 판정기준 작성 결과 가~사 항목 중 한가지 항목이라도 “예(YES)”로 기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로 판정한다.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비거주자용)

※ 제출하는 []에 □ 표를 합니다. (일 쪽)

전수번호	전수일자	
1. 신청인의 민족사항		
① 성명 (Last Name) HONG	② 이름 (First Name) JOHN	③ 중간 이름 (Middle Name)
④ 주소 (거주지역 주소) 1001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USA		⑤ 국내 거소 (국내 거소) 서울 종로구 수술동 104
⑥ 난민자번호 21-1234567	⑦ 생년월일 1971.07.01	⑧ 거주지국 UNITED STATES
⑨ 전화번호 (거주지 전화) 053-1234-1367		⑩ 모바일 전화 (국내 전화) 02-123-4567
⑪ 휴대전화 [] 없음	⑫ 최근 1년간 [] 없음	⑬ 최근 2년간 [] 없음
2. 신청인이 격려받고자 하는 규정		
⑭ 대한민국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간의 조세조약 제_____조 제_____항 제_____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전 소득 세율 _____%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_____조 제_____항 제_____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본인 소득 세율 _____%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_____조 제_____항 제_____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득 세율 _____%		
3. 비거주자 판정기준		
⑮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	
⑯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	
⑰ 최근 2년 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입니까?	예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	
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	
⑲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	
⑳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까?	예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	
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입니까?	예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	
㉒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국가명을 기입하십시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비거주자 판정기준

항 목	예	아니오
⑮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	
⑯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	
⑰ 최근 2년 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입니까?	✓	
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	
⑲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	
㉑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까?	✓	
㉒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입니까?	✓	
㉓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국가명을 기입하십시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의 판정방법

※ 외국인(재외국민) 내점시 징구서류

- 1) **외국인 거주자** :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징구(거주자 여부 확인)
- 2) **외국인 비거주자(내국인 비거주자 포함)** :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여권사본

Q1.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받지 못할 경우 비거주자인 고객님이 받는 불이익은 무언가요?

Ans1. - 국내세법상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22%)을 적용 받게 됩니다. (제한세율의 경우 이보다 낮습니다.
예: 일본 10%)

Q2.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외 받아야 할 서류가 있나요?

Ans2.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은 필수 첨부 서류입니다. 미제출 시 국내세법상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22%)을 적용 받게 됩니다. 따라서, 거래고객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개의 동의를 받아 [7012]에서 확인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Q3. 비거주자인 고객님이 요구불 예금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도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 받아야 하나요?

Ans3. - 2012년 7월 1일 이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받아야 합니다.

상황별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확인 방법

- ①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 ②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③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④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기재사항 확인				상황
①	②	③	④	
친권기재 없음	부모 유	자녀 유	자녀 유	친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
	부모 유 (일방 사망)	자녀 유 (배우자 사망)	자녀 무	친부모가 사별한 경우로 <u>현재 생존한 법정대리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서 사별한 배우자 사이의 전후 자녀 확인 불가</u>
친권행사자 부 또는 모	친권자 유	자녀 유	자녀 무	친부모 이혼한 경우로 부모 중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한 경우 <u>현재 법정대리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서 前 배우자 사이의 자녀 확인 불가함</u>
친권행사자 부모 또는 공동친권	친권자 유	배우자 무 또는 유향한 배우자임 즉, 일방 친권자 무	자녀 유	친부모 이혼한 경우로 부모 양방이 친권을 보유한 경우 <u>현재 법정대리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서는 배우자가 없거나 있는 경우 재혼한 배우자로 자녀의 친권자는 아니므로 공동친권자 일방이 확인할 수 없음</u> <u>또한 현재 법정대리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서는 공동친권자 일방이 확인할 수 없으며, 前 배우자 사이의 자녀도 확인 불가함</u>
친권행사자 1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친부모 이혼한 경우로 부모 중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한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만으로 법정대리인 확인 가능함
친권행사자 2인의 각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	-	친부모 이혼한 경우로 부모 양방이 친권을 보유한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만으로 법정대리인 확인 가능함